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장례 부조

COVID-19 팬데믹은 많은 가정에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FEMA의 임무는 재난 전에, 재난 발생 중에, 그리고 재난이 끝난 후에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야기한 금전적 스트레스와 짐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FEMA는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COVID-19 관련 장례비에 대한 금전적 부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례비 부조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망은 미국령, 컬럼비아 자치구(DC)를 비롯한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에는 COVID-19가 사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는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장례 비용을 부담한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미국령 거주자), 또는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입니다.
- 사망한 사람이 미국시민이거나 비시민 국민, 또는 자격있는 외국인이었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어떤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례식과 매장 또는 화장에 대한 비용의 예로서, 최대 2인이 사망자를 확인하기 위한 교통비, 유해의 이송, 캐스킷(관)이나 유골을 담은 항아리(urn), 장지 또는 납골 공간(cremation niche), 표지 또는 비석, 목사 또는 사제의 예식서비스, 장례식의 준비, 장의사 장비 또는 직원의 사용, 화장 또는 매장 비용, 복수의 사망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등입니다.

FEMA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부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성명, 사회보장번호(SSN), 사망일, 우편주소, 연락처 등.
- 각 사망자의 성명, 사회보장번호, 출생일.
- 사망자가 사망한 장소의 위치 또는 주소.
- 매장보험이나 장례보험, 기부, 자원봉사기관, 기타 정부 프로그램이나 비영리단체 등 다른 출처로부터 이미 받은 부조에 대한 서류 및 영수증.
- 동일한 사망자에 대해서 본인과 다른 사람 모두 장례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다른 사람을 공동신청자(신청서에 그 사람의 성명, 사회보장번호, 출생일 기재)로 둘 수도 있습니다.

부조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청을 한 후

[Disasterassistance.gov](https://www.disasterassistance.gov)

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팩스 (855-261-3452)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우편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COVID-19 Funeral Assistance
P.O. Box 10001
Hyattsville, MD 20782

또한, 다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FEMA.gov/disasters/coronavirus/economic/funeral-assistance](https://www.fema.gov/disasters/coronavirus/economic/funeral-assistance). 전화 및 웹사이트 모두 몇 개의 언어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FEMA의 COVID-19
Funeral Assistance Helpline
(장례부조 헬프라인)에**
1-844-684-6333
(TTY: 800-462-7585)
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9시(동부 표준시)
사이에 연락하여 신청절차를
시작하세요.



FEMA